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13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서영교 · 박지원 · 김승원
이병진 · 박홍배 · 박지혜
김병주 · 김준형 · 박희승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 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 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를 “2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소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아동에게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에 추가로 지급한다.

1. 0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 10만원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5만원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각각 “1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로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u>10만원</u> 을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⑤ <u>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u>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u><신 설></u>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u>18세</u> ----- ----- <u>20만원</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2세</u> ----- ----- ----- -----. ⑥ 주소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아동에게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에 추가로 지급한다. 1. 0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 <u>10만원</u>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u>5만원</u>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 ·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u>8세</u>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 ----- ----- -----18세-----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 · 질문 등) ① ~ ④ (생략)	제7조(조사 · 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⑤ ----- ----- -----18세----- -----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18
세-----

-----.

② (생략)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u>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u> 지급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④·⑤ (현행과 같음)
--	---